

<붙임 1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

2. 주요 변경내용

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

변경 전	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(10,000,000) 주로 한다.
변경 후	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(20,000,000) 주로 한다.

■ 첨부서류

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